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에는 한 개 사업만 수행 가능

* ① 로컬크리에이터(협업) / ② 로컬 브랜드 창출 / ③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 (선정일 ~ '24. 12월(예정))

□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신청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 정의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7대 유형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 (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지원규모** : 총 150개사 내외

< '24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권역별 주관기관 현황 >

권역	수도권·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포함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주관기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단, 지원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원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80%, 자부담금 20%로 구성

** 선정 기업의 사업화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원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80%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상
예시	5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현금 또는 현물)

* (현물) 신청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사업비(총사업비) 집행항목 세부사항 >

집행항목	집행내역	비고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 브랜드(CI, 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디자인 등 관련 용역비	
기타	○ 행사 운영, 시설환경개선 등 용역비	
인건비	○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자부담금(현물)만 가능
	○ 직접 상사·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광고선전비	○ 온·오프라인 광고 선전, 언론게시 등을 위한 비용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관 자문 지급수수료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자부담금(현물)만 가능
	○ 사업장 역할·기능을 하는 임차비(월세 등)	
재료구입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사업활동비	○ 역량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세미나·학회·교육 등 참가비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1)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가능
- 2)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3)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4)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5)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6)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 용역거래는 불가함
- 7)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 할 수 없음

□ 우대지원 : 아래 5가지 우대 조건 중 최대 점수 1건만 인정(중복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5점), ② 사업장소재지가 [별첨3] 지역발전특구 내 위치하고 사업 아이템이 해당 특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1점)
- (타부처) ①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3점),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3점) ③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기 수혜업체가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3점)

◆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 (증빙)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의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 (관련지역)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도시(24곳)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13곳)
- (자격)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사업에 1건 이상 또는 1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직인이 있는 추천서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 (자격)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자(2021~2023년)
- (증빙)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 확인서

□ 연계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수혜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및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 시 연계 지원

* 혁신성장촉진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3

신청 및 접수

- **공고일** : 2024년 2월 7일(수) ~ 3월 8일(금), 16:00 까지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6일(금) 10:00 ~ 3월 8일(금), 16:00 까지
 -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http://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p>◆ 유의사항</p> <p>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p> <p>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p> <p>3)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삭제 불가</p>
--

- **신청지역** : 활용하는 지역자원·문화의 소재권역을 선택하여 신청
 - *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서식 1] 양식을 hwp파일로 업로드하며, 나머지 서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http://www.sbiz24.kr)에 직접입력 및 스캔본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소상공인24 직접입력
	2 사업계획서	[서식1] 작성하여 업로드
	3 (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정보제공 동의 시 시스템 자동 연동하여 서류 확인 가능
	4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 미동의시 소상공인이 직접 업로드
선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24 직접입력
	6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소상공인24 직접업로드

<p>◆ 유의사항</p> <p>1)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sbiz24.or.kr)를 통해 작성</p> <p>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p> <p>3)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인정불가 ** 정보제공 동의시 공단에서 시스템을 연동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미동의 또는 기존 발급이력이 없을 시 소상공인이 직접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하여 업로드해야함(5일~10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소상공인확인서 문의처 : 1811-6508</p> <p>4) 사업계획서 최대용량은 30MB이므로 용량 초과 시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p>
--

□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구분	세부요건
신청 자격	<p>① 사업신청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충족하는 소상공인*</p> <p>◆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p> <p>*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1], [별첨2] 참고</p>
신청 제외대상	<p>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p> <p>*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고</p> <p>②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p> <p>* 공고번호 : 제2020-171호, 제2020-394호, 제2021-197호, 제2021-351호, 제2022-93호, 제2022-305호, 제2023-82호, 제2023-119호, 제2023-137호</p> <p>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p> <p>*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p> <p>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p> <p>*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p> <p>⑤ 중소기업확인서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p> <p>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p> <p>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p> <p>*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p> <p>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p> <p>⑨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p>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① 서류 평가	② 발표평가	③ 최종선정
서류평가(100+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	10분 발표, 10분 이상 질의응답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제외)

* 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평가 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반영)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평가지표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지역성(50)	• 지역 이해도 및 자원 활용도	25점
	• 지역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5점
성장 가능성(50)	• 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15점
	•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	20점
	• 자금 조달·활용 계획 및 시장진입, 성과창출 전략	10점
	• 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 역량	5점

< 서류평가 우대(가점)사항 >

구분	연계사업	가점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5
2	지역발전특구	1
3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3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3
5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3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 발표평가 :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선정자 선정

* 발표평가(PT 양식,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정부지원금 배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배정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소상공인24 누리집(홈페이지) '24.2.7.(수)	신청·접수 소상공인24 누리집(홈페이지) '24.2.16(금)~3.8(금), 16시까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소진공, 주관기관 '24.3~4월 중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소진공-주관기관-소상공인 ~'24.5월 중	협약 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4.5월	지원대상 선정 공지 소상공인24 누리집(홈페이지) '24.4~5월
사업 수행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추진 '24.5월~12월	중간(수시) 보고 및 점검 주관기관, 소상공인 '24.8~9월 중	최종보고 및 점검 소진공, 주관기관, 소상공인 '24.12월 중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소상공인)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24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hwp 파일만 업로드**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함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사·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문의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순번	주관기관명	해당권역	연락처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수도권, 강원	033-248-7937
			033-248-7935
2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064-710-1980
			064-710-1970
3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전북, 광주	061-661-1945
			061-661-1937
4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054-470-2645
			054-470-2654
5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 대전, 충남, 충북	044-999-1042
			044-999-2160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항목	평가 항목
<input type="checkbox"/> 일반 현황	- 대표자, 아이템명 등 일반현황 및 제품(서비스) 개요
<input type="checkbox"/> 아이템 개요(요약)	- 지역 내 활용 예정인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아이템 지역성, 차별성, 아이템 이미지 등을 요약하여 기재
1.지역성	1) 지역이해 1-1)-① 지역에 대한 이해도 - 활용하는 지역과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소상공인의 지역특색 이해 수준(정량, 정성 등) 기재
	2) 자원활용도 1-2)-① 자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 지역자원을 고유한 특성과 특색을 활용하는 사업모델과 지역자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기재
	3) 지역가치 창출가능성 1-3)-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창출 가능성 -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과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내 방문객 유도 가능성 등 지역가치 창출 가능성 기재 1-3)-②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 지역 내 활용 예정인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및 향후 실천 계획을 기재
2.성장 가능성	1) 문제인식 (Problem) 2-1)-① 사업아이템의 개발동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를 착안하게 된 동기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재 2-1)-② 사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 지역 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사업아이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필요성)을 기재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 등 기재
	2) 실현가능성 (Solution) 2-2)-① 사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사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에 맞춘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기재 2-2)-② 사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사업아이템의 지역 내·외 수요 및 소비자 타겟팅과 니즈와 차별화 전략, 지자체 연계방안 등 기재
	3) 성장전략 (Scale-up) 2-3)-① 자금소요 및 집행계획 - 사업화 단계를 확인하고, 사업화 단계별 자금투입계획 등 기재 2-3)-②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시장진출(확장)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포지셔닝을 확인하고, 해당 산업군에 특화된 시장진출 및 판매전략(유통채널, 시기, 판매금액 등) 기재
	4) 팀 구성 (Team) 2-4)-①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사업아이템 개발(제작)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대표자와 팀원이 보유한 전문성 및 담당업무와의 적합성 등 기재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사업계획서

※ 본문 15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양식 내에 있는 '파란색 안 내 문구'는 전부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 일반현황

사업아이템명					
신청자 성명	홍길동(남/여)	생년월일	1900.00.00		
업체명	0000	사업장 소재지	00도 00시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00. 00. 00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개인, 법인)		
기업로고		홈페이지	www.000000 (없을 경우 공란으로 제출)		
로컬유형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온라인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주요성과('23년)					
고용(명)	매출(백만원)	수출(백만원)	투자(백만원)	누적투자(백만원)	
0명 (대표자 제외) <small>※ 신청일 기준 현재 고용인원</small>	00백만원 <small>※ '23년 총 매출</small>	00백만원 <small>※ '23년 총 수출 (수출실적 발생 당월 기준한월)</small>	00백만원 <small>※ '23년 총 투자유지</small>	00백만원 <small>※ 창업 이후 누적 투자액</small>	
지역자원 설명 (여러개인 경우 행추가)	자원명	자원 소재지역		자원형태	
	000	소재지		유형, 무형	
	000	소재지		유형, 무형	
조직 구성 (신청자 제외)					
순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1	매니저	000	마케팅 담당	00기업 홍보 경력 0년	팀원
2	직원	000	콘텐츠 개발	00대 경영학 전공	팀원
...					
...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개요(요약)

사업아이템 소개	※ 지역자원으로 중심으로한 사업아이템의 핵심기능(서비스), 소비자층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연계지역 및 활용자원	※ 연계지역·활용자원의 개요 및 자원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사업아이템의 차별성	※ 아이템의 현재 개발단계를 포함하여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기재 예) 아이디어, 서비스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목표시장	※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 삽입
	< 사진(이미지) 제목 >	< 사진(이미지) 제목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 삽입
	< 사진(이미지) 제목 >	< 사진(이미지) 제목 >

< 1. 지역성(Local) >

1) 지역이해도

① 지역에 대한 이해도

※ 활용하는 지역과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신청자의 지역특색 이해 수준(정량, 정성 등)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
-

2) 자원활용도

① 자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 지역자원을 고유한 특성과 특색을 활용하는 사업모델과 지역자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
-

3) 지역가치 창출가능성

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창출 가능성

※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과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내 방문객 유도 가능성 등 지역가치 창출 가능성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
-
-
-
-

②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 지역 내 활용 예정인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및 향후 실천 계획을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
-
-
-
-

< 2. 성장가능성 >

1) 문제인식 (Problem)

① 사업아이템의 개발동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를 착안하게 된 동기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
-
-
-
-

② 사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 지역 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사업아이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필요성)을 기재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 등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
-
-
-
-

2) 실현가능성 (Solution)

① 사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사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에 맞춘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
-
-

<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23.0.0. ~ 2023.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23.0.0. ~ 2023.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② 사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사업아이템의 지역 내·외 수요 및 소비자 타겟팅과 니즈와 차별화 전략, 지자체 연계방안 등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
-
-
-

3) 성장전략 (Scale-up)

① 자금집행 및 조달계획

※ 사업화자금 활용계획, 자원(자기자본, 투자유치) 등 자금조달계획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총괄표 >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80%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상
구성	5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현금 또는 현물)

□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총 4천만원)

○

-

< 정부지원금 집행계획 >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개발		
브랜드		
홍보		
기타		
수수료 및 사용료		
광고선전비		
전문가활용비		
기기장비 임차비		
재료구입비		
사업활동비		
합 계		40,000,000

□ 자부담금 구성 계획(총 1천만원)

○

-

□ 추가 자원(자기자본, 투자유치 등) 조달 계획(해당시)

○

-

②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시장진출(확장)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포지셔닝을 확인하고, 해당 산업군에 특화된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유통채널, 시기, 판매금액 등)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

○ 시장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롯데마트	2014.2.14.~2014.2.22.		000백만원
...			
...			
...			

4) 조직 구성

① 대표자 및 조직원의 보유역량

※ 사업아이템 개발(제작)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대표자와 팀원이 보유한 전문성 및 담당업무와의 적합성 등 기재
 ※ 제출시 표 삭제 필수

○ 대표자 현황 및 역량(이력 포함)

-

○ 조직원 현황 및 역량(이력 포함)

순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연월
1	매니저	○○○	사업운영	00대학 컴퓨터공학과 전공	'19. 8
2	사원	○○○	영업	○○기업 영업직 경력 8년	'21.2
3	...				
4	...				
5	...				

○ 향후 고용계획(협약기간 내)

현재 재직인원(대표자 제외)		명	추가 고용계획(협약기간내)	명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예정일
1	S/W 개발	IT분야 전공 학사 이상		'23. 8
2	해외 영업(베트남, 인도네시아)	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		'23. 9.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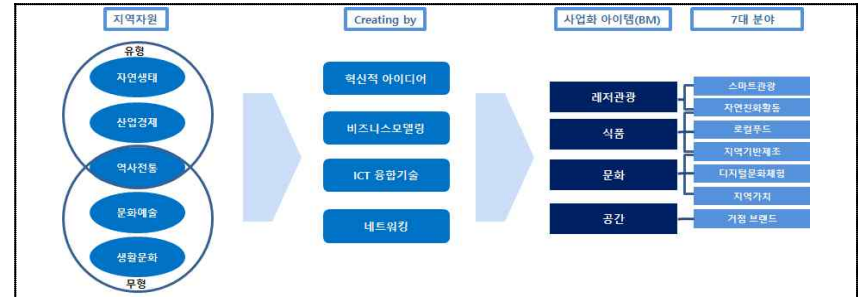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 로컬크리에이터 개념 >

[정의]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



[요건]

- ①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
- ②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창업하는 자
- ③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나타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

구분	내용
지역가치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로컬푸드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관광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 문화체험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